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명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03

발의연월일: 2021. 4. 15.

발 의 자:권명호·정희용·박대수

정진석・강민국・이철규

임이자 • 윤창현 • 김형동

정운천 · 이종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(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및이에 부가되는 세목)에 대한 재산의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(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)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장 및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,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도전하고자 하는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

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려는것임(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의6제2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 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) ① 제99 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.
 - ② 제99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거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9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고지의 유예

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9조의6(재기중소기업인의 체	제99조의6(재기중소기업인의 체
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	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	2
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	
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	
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<u>2021년 12월</u>	<u>2024년 12월 31</u>
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	<u> 일</u>
여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	⑤ <u>2024년 12월 31일</u>
조에 따른 창업, 지정 또는 확	
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	
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	
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	
적용하지 아니한다.	
⑥・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제99조의8(재기중소기업인에 대	제99조의8(재기중소기업인에 대
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	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
례) ① 세무서장은 「중소기업	례) ①
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	
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이	

조에서 "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"이라 한다)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납부고 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 •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(이하 이 조에서 "지정납 부기한등의 연장"으로 한다)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 에서 "재기중소기업인"이라 한 다)가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<u>2021년 12월 31일</u>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(소득세, 법인세.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 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 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 의 연장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 서는 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 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 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

<u>2</u>
024년 12월 31일

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
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
할 수 있고, 납부고지의 유예
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
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
을 정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